

1. 개정이유

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여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악대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)

나.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견장의 종류 및 기본규격을 신설함
(안 제7조, 별표2)

다.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함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중앙소방악대 편성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중앙소방악대 편성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규정"을 "훈령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중앙소방악대(이하 "악대"라 한다)의 운영과 악대 대원(이하 "악대원"이라 한다)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.

제5조제1항 중 "별표와"를 "별표 1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"을 "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 중 "약장 등을 착용한다"를 "약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,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"(연습 및 행사참여)"를 "(연습 및 행사 참여)"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 중 "시·도 악대"를 "각 파트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

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.

제13조 중 "별지 서식"을 "별지 제1호서식"으로 한다.

제17조 중 "2024년 6월 30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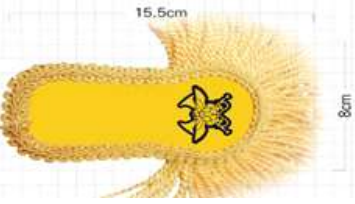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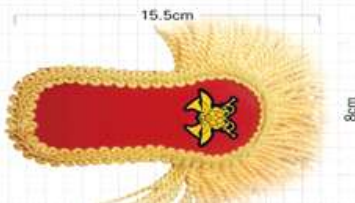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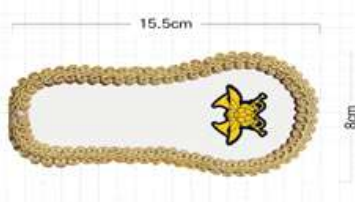
[별표 1]

악대규모에 따른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(제5조제1항 관련)

인원 악기명	24인조	30인조	36인조	50인조	비고
피콜로			1	2	
플룻	1	1	2	3	
클라리넷	3	4	4	5	
바순			1	2	
앨토색소폰	2	3	3	4	
테너색소폰	2	2	2	4	
트럼펫	4	5	5	6	
트럼본	3	4	4	5	
유포늄	2	2	3	4	
호른	2	3	3	4	
튜바	1	2	2	3	
수자폰	1	1	1	2	
스네어드럼	1	2	2	3	
베이스드럼	1	1	1	1	
글로겐슈필			1	1	
심벌즈	1	1	1	1	

[별표 2]

중앙소방악대 어깨 견장의 기본규격(제7조 관련)

구 분		형 상	제 작 양 식	색상 및 재질
중 앙 소 방 악 대 어 깨 견 장	지 도 교 수 용		1. 앞면은 금색 금속사로 자수 장식하고, 금속사 술을 굴곡 형태로 단다. 2. 뒷면에는 고리 2줄을 붙인다. 3. 고리 2줄의 폭은 각각 1.5cm로 한다 4. 크기: 가로 15.5cm. 세로 8cm 5. 악대 표지를 삽입하며 크기는 가로4.0cm, 세로3.0cm로 한다.	1. 색상: 황색 2. 재질: 폴리에스테르 100%
	일 반 행 사 용		1. 앞면은 금색 금속사로 자수 장식하고, 금속사 술을 굴곡 형태로 단다. 2. 뒷면에는 고리 2줄을 붙인다. 3. 고리 2줄의 폭은 각각 1.5cm로 한다 4. 크기: 가로 15.5cm. 세로 8cm 5. 악대 표지를 삽입하며 크기는 가로4.0cm, 세로3.0cm로 한다.	1. 색상: 적색 2. 재질: 폴리에스테르 100%
	추 모 행 사 용		1. 앞면을 금색 금속사로 자수 장식한다. 2. 뒷면에는 고리 2줄을 붙인다. 3. 고리 2줄의 폭은 각각 1.5cm로 한다 4. 크기: 가로 15.5cm. 세로 8cm 5. 악대 표지를 삽입하며 크기는 가로4.0cm, 세로3.0cm로 한다.	1. 색상: 흰색 2. 재질: 폴리에스테르 100%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<u>규정</u> 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<u>훈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적용범위) 중앙소방악대(이하 “악대”라 한다)의 운영과 악대 대원(이하 “악대원”이라 한다)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<u>규정</u> 을 따른다.	제2조(적용범위) 중앙소방악대(이하 “악대”라 한다)의 운영과 악대 대원(이하 “악대원”이라 한다)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<u>훈령</u> 을 따른다.
제5조(편성) ① 악대는 소방청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하며,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은 <u>별표</u> 와 같다.	제5조(편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</u> <u>과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악대의 대장(이하 “악대장”이라 한다)은 악대원 중에서 악대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소방청	③ ----- ----- -----

장이 임명하며,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제7조(복제) 악대는 행사 연주 시 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 또는 「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」에 따른 정복과 예장계급장, 악장 등을 착용한다.

제8조(연습 및 행사참여) ①·② (생략)

제10조(악대원의 선발)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1조(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2. (생략)

3. 위원 : 시·도 악대 대표자

③ ~ ⑤ (생략)

-----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복제) -----

----- 악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,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.

제8조(연습 및 행사 참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악대원의 선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 각 파트별 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⑥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</u> <u>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</u> <u>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</u> <u>기간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⑦ <u>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</u> <u>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</u> <u>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.</u>
제13조(지원신청) 악대원으로 지 원하고자 하는 자는 악대원 선 발 시 <u>별지 서식</u>의 중앙소방악 대 지원신청서를 소방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.	제13조(지원신청) ----- ----- --- <u>별지 제1호서식</u>----- ----- -----.
제17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 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 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 는 <u>2024년 6월 30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제17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

중앙소방악대 편성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중앙소방악대(이하 “악대”라 한다)의 운영과 악대 대원(이하 “악대원”이라 한다)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.

제3조(설치) 악대는 소방청에 설치하고 연습실 및 악기실은 중앙소방학교에 둔다.

제4조(임무) 악대는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여하여 악기를 연주함을 임무로 한다.

제5조(편성) ① 악대는 소방청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하며,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.

③ 악대의 대장(이하 “악대장”이라 한다)은 악대원 중에서 악대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소방청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.

④ 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지휘자를 선정하되, 행사 성격에 따라 지

도교수를 지휘자로 할 수 있다.

⑤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) ① 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화재예방국장이 총괄한다.

② 연주연습 및 행사지원 등 악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악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.

③ 악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, 정기연습·행사참여 등 필요시 출장 조치하여 운영한다.

제7조(복제) 악대는 행사 연주 시 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 또는 「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」에 따른 정복과 예장계급장, 약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,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.

제8조(연습 및 행사 참여) ① 악대 연습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운영(연 2회 이상)으로 정기 합주연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악대 지원행사가 있을 경우 또는 필요시 수시연습을 할 수 있다.

② 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1.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
2. 유관기관 또는 시·도 소방본부 주요행사
3. 대국민 소방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
4. 자선 및 사회봉사 목적의 행사
5.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제9조(지도교수 위촉) ① 악대원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를

위촉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지도교수는 악대 연습 및 워크숍,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④ 지도교수가 정기연습 및 워크숍,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악대원의 선발) ① 악대원은 매년 1회 이상 선발하며,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.

② 악대원 중 행사 참여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악대장이 선정한다.

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악대원이 적극적으로 악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악대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 : 소방청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
2. 부위원장 : 악대장
3. 위원 : 각 파트별 대표자

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한다.

1. 악대원 선발 및 자격상실 여부 결정

2. 유관기관 요청 행사의 참여 여부 결정

3.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거나,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,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진행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.

제12조(악대원의 의무) 악대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성실히 행사에 참여하여 악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원신청) 악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악대원 선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소방악대 지원신청서를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악대원의 자격상실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본인이 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

2. 정당한 사유없이 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

3. 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

제15조(포상) 소방청장은 악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

는 악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6조(예산지원) 소방청장은 악대원의 교육 및 악대 운영·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